구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아래 3, 5, 6, 7 제외)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 (아래 4 제외)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해저광물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 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